

(재)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 2019-00호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 후보자모집 재공고

서울디자인재단은 「노동이사 자격기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현장 경험을 경영에 접목할 노동이사의 후보자 모집을 재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재)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재)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

1. 임명예정 직위

- 노동이사 : 1명

2. 주요 직무내용 및 편의제공내용

○ 노동이사 직무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이사회 개최 시)

-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편의제공 내용

- (근무부서) 노동이사 요청시 근무를 충실히 하기위한 부서로 전보조치 가능
- (근무평정) 평가등급별 인원에서 제외하되 임용 직전 평정등급으로 정하며, 최소 'A' 등급이 되도록 함
- 노동이사 활동시간 기준은 월 3일 이내로 함
- 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지방공기업 평가원 직무과정 활용 등)

3.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 근로계약 해지 시 이사의 임기도 자동 종료

4. 자격요건

-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비보직자/직무대리 포함)
(※ 인사, 노무, 감사 담당자 제외)
- 지방공기업법령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보 수 : 연봉 없음(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실비지급)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9(수) ~ 2019. 6. 1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재단8층 경영지원팀 사무실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 선거사무국(shj1982@seoul-design.or.kr/2096-0090)

7. 제출서류

- [별지1] 후보자등록 신청서
- [별지2]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8명 이상 서명 완료 必)

8. 전형방법 : 직원투표 100%반영,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9. 투표 일시

- 투표 일시 : 2019. 7월(예정)

10. 임 명 : 서울시장이 임명함

(재)서울디자인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재)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